

의안번호	2220510
의 퇴 인	전은수 의원
회 답 일	2026. 9. 29.
추 계 번호	26A40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0조제1항(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차장, 비가리개, 전기·가스·화재·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안전시설물”이라 한다) 및 제2호의 2에 따른 기후재난 대응시설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음 — 2의2. 기후재난 대응시설: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상인과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냉방·난방시설, 환기·차열시설, 그늘막,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개량·보수	재량규정
2	안 제20조제3항(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안전시설물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기후재난 대응시설의 설치·개량·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20조제5항 신설(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기후재난 대응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이 경우 조사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4	안 제20조제6항 신설(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기후재난 대응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20조의3 신설(기후재난 대응시설의 운영비 지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염·한파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제20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기후재난 대응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0조제1항(상업기 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0조제3항(상업기 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3	안 제20조제6항 신설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	
4	안 제20조의3 신설(기 후재난 대응시설의 운 영비 지원)	
5	안 제20조제5항 신설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	·미대상 －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 제9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 포경영 실태조사”에 개정안에 따른 ‘시장등의 기후재난 대응시설 설치·운영 실태’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함)의 대
상에 기후재난 대응시설을 포함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재난 대응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
려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①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일정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해 기후재난 대응시설의 설치·개량·보수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②폭염·한파로 인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기후재난 대응시설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기후재난 대응시설’이란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상인과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냉방·난방시설, 환기·차열시설, 그늘막,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함(안 제2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기후재난 대응시설 설치·개량·보수의 지원 대상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수준·규모와 기후재난 대응시설 운영비의 지원 대상·기간·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의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진입도로, 냉난방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및 전기·가스·소방 관련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은 2020년부터 광역 지방정부 사업으로 이관되었으며, 광역 지방정부별로 세부내용이 상이함

※ [참고자료 1] 시설현대화사업 개요 및 광역 지방정부별 ‘25년 지원실적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1)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시장상권인프라 조성’을 통해 전통시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지원 중으로, 동 내역사업 중 전기·소방 등 노후시설 보수 및 화재 예방 시설 설치 등 안전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임

※ [참고자료 2]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개요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1)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54-304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손희정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손희정	02-6788-3750	hjson87@assembly.go.kr

[참고자료 1] 시설현대화사업 개요 및 광역 지방정부별 '25년 지원 실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 시설현대화사업 개요

☐ 사업개요 ※ 광역 지방정부 사업으로 지방정부별 세부내용 상이

- (사업목적)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고객·매출증대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개선, 기반시설 설치 지원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추진방법) 광역 지방정부에서 사업 추진*

* 중기부 소관 사업이었으나, '20년부터 지방정부로 이관 / 국비 지원 無

☐ 지원내용

-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진입도로, 냉난방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및 전기·가스·소방 관련 안전시설물 등

2. 광역 지방정부별 '2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실적

[표 1] 광역 지방정부별 '2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실적

광역	지원 예산 (억원)	전체 시장(곳) (A)	지원 시장(곳) (B)	전체 대비 지원비율(%) (B/A)
서울	120	194	56	28.9
부산	80	158	47	29.7
대구	22	109	26	23.9
인천	41	44	32	72.7
광주	11	25	12	48.0
대전	45	27	17	63.0
울산	16	41	19	46.3
경기	60	148	11	7.4
강원	38	62	23	37.1

광역시	지원 예산 (억원)	전체 시장(곳) (A)	지원 시장(곳) (B)	전체 대비 지원비율(%) (B/A)
충남	21	59	11	18.6
충북	20	57	19	33.3
전북	31	57	9	15.8
전남	59	99	12	12.1
경북	73	139	11	7.9
경남	63	157	37	23.6
세종	0.6	4	4	100.0
제주	88	23	21	91.3
합계	789	1,403	367	26.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자료 2]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개요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전기·소방 등 노후시설 보수 및 화재 예방 시설 설치 등 안전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더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 **(지원규모)** '26년 132억원(6,701개 점포) * '25년 86억원(5,851개 점포)
- **(추진주체)** 지방정부(시·도, 시·군·구)
- **(지원한도)** 개별점포당 총사업비 최대 500만원(시장규모에 따라 최대 15억원)
 - **매칭비율:** 국비 70%(350만원 이내), 지방비·자부담 30%(150만원 이내)
 - * 자부담비는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시장규모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 기준 >

신청점포수	100개 미만	100개 이상 ~ 500개 미만	500개 이상
총 사업비(최대)	500백만원	1,000백만원	1,500백만원
국비(70%)	350백만원	700백만원	1,050백만원
지방비·자부담(30%)	150백만원	300백만원	450백만원

□ 지원내용

- **(개별점포)** 개별점포의 화재 및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전기, 소방, 가스, 기타분야 시설물 개선·설치

지원부문	사업 내용
전기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차단기 및 분전반,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
소방	▶ 개별점포별 화재알림시설(감지기, 수신기, 속보기 등) 설치 ▶ 개별점포의 화재 안전 품목
가스	▶ 개별점포별 가스 안전시설물 설치(가스 보관함, 가스누출 경보기, 가스차단기 등)
기타	▶ 개별점포의 화재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 풍수해, 폭염*·폭설·폭우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 * 쿨링포그, 이동식 냉풍기 ▶ 스마트안전기술(AI 화재감시 CCTV, 원격점검 시스템, 지능형출동시스템 등)

- **(공용구간)** 노후·알림·가스·기타부문 개별점포에 사업 추진 후 잔여예산에 한해 화재·재해 예방에 필요한 설비 등을 정비·설치